공고 제 17 호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02월 11일

동백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서**	서** 1965-04-11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-02-11